

서울특별시 독성물질 중독관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2224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1년 2월 5일
제출자 : 서울특별시

1. 제안이유

- 가. 주요 선진국에서는 시민이 독성물질에 중독되었을 경우 응급의료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, 우리나라의 경우 독성물질에 중독되었을 경우 응급실을 가는 것 외에 다른 조치방법이 없어 의료비용 증가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매우 큰 상황임
- 나. 이에 독성물질 중독으로 인한 시민의 피해를 예방하고, 시민이 중독사고 시 적절한 응급의료정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「서울특별시 독성물질 중독관리센터」를 설치하고 위탁 운영하고자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사업개요

- 위탁기간 : '21. 5. ~ '23. 12.(2년 8개월)
- 인 력 : 센터장 1명(비상근), 프로그램 코디네이터 1명(상근), 행정전산원 1명(상근), 상담원 1명(상근)
- 소요예산 : 480,000천원 ('21년, 시비100%)
- 위탁내용
 - 독성물질 데이터베이스(DB) 구축
 - 화학제품 사용정보 및 응급의료정보 서비스 제공(전화 및 인터넷 상담)
 - 일상생활 중 중독 또는 과노출되는 독성물질의 정보제공
 - 독성물질 노출, 중독 사고 등 모니터링을 통한 중독 예방·관리

나. 필요성

- 독성물질 정보 제공뿐만 아니라 응급의료정보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상담원의 전문성(간호사 등)이 요구되므로 응급의료 정보제공과 치료 연계가 가능한 전문기관(단체 또는 법인)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함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서울특별시 독성물질 중독 예방 및 사고 안전에 관한 조례 제5조

제5조(센터의 운영) ② 시장은 센터의 응급의료정보 제공과 원활한 치료연계를 위하여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-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

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5. 시립병원, 보건·건강증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

나. 예산조치 : 별도 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 :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이정석 (☎ 2133-7670)